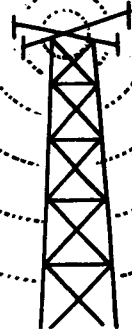


9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편집국장)

축산법 시행 규칙 개정

농수산부는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8월 17일 부령 제735호로 공포 하였다. 우리 양계부문과 관계가 있는 이번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양계산업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한 점이다.

과거 농수산부 장관이 고시하였던 종란의 규격 기준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종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업계의가장 큰 관심사인 종계확인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시될 종계 검사 기준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시행되며 종란의 사용이 종계 검사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되면 사용할수 있으므로 소형 난에서 부화

된 초생추의 육추기술등이 일반 농가에 보급 되어져야 하겠다.

부화장 종계장 시설의 최소한의 규제는 앞으로 품질 경쟁을 통하여 자연 합리적인 시설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 양계업계가 축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현실을 감안할때 이제는 어떤 규제 보다는 자유 경쟁에 의한 품질 경쟁으로 양계산물의 생산 원가를 내리도록 정책적으로 지도 하여야 하겠다. 지나친 규제는 잘하려고 하는 업체에는 부담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번 새로 공포된 축산법 시행규칙의 내용 전문이다.

축산법시행규칙

1978. 8. 17 농수산부령 제735호

제 1 장 종 축

제 1 조 (집승의 종류)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서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집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 당나귀, 토끼, 친칠라 및 개
2. 사양하는 밍크·사슴·메추리·평및
꿀벌

② 법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서 “종란”이라 함은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종계검사 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구비한 것
2. 추백리 및 가축 전염병의 검색결과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것

제 2조(종축검사 대상 가축 등) ① 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감정사를 받은 가축은 한우·유우·육우 및 돼지 기타 품종개량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되는 가축으로 한다

② 농수산부 장관은 법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정기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의 종류에 따라 정기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 3조(종축검사일) ① 법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는 매년 3월 또는 4월에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일의 30일 전까지 검사의 시기·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조(종축검사의 신청) 법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종축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하며, 이하 “군수”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당일에 종축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종축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 5조(종축검사원) 종축검사원은 종축검사를 행하는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산기술공무원
2. 축산단체의 기술직원
3. 기타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 6조(종축검사기준 및 후보종축지정 기준) 법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의 기준과 법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종축지정의 심사기준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7조(종축 및 후보종축의 증명서) ① 법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종축증명서와 법제 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종축 증명서는 별지 제 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종축 후보종축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증명서 또는 후보 종축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축검사를 행한 기관의 장은 종축검사에 합격한 가축과 종축용으로 배부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종축표지를 왼쪽 귀에 붙이게 할 수 있다.

제 8조(수정제한 질환) 법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을 제한하는 종모축의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과 그 의사증
2. 유전성 질환
3. 번식기능을 장애하는 질환

제 9조(수정대장) 종모축의 사양자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수정대장을 비치하고 그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10조(거세) ① 도지사는 법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세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거세할 가축의 종류와 거세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세한 가축의 사양자에게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거세기술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사일로 부터 30일내에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

2. 거세기술증명서
3.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검안서
4.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 사체이용불 평가조서

제11조(대여종축의 종류) 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는 종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육우·유우의 종모우 및 종빈후
2. 종모마 및 종빈마
3. 종모돈 및 종빈돈
4. 종 계
5. 종 양
6. 종 토

제12조(종축대여 대상자) 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종축장 및 시험 연구기관
2. 가축인공수정소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정종축장
3.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 협동조합의 종축장

제13조(종축대여기간) ① 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기간은 4년이내로 하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기간 종료전이라도 그 대여한 종축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대여종축을 적정하게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2. 종축의 배여를 받은자가 이 규칙 또는 대여조건에 위반하거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대여종축의 사양관리) ① 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종축의 인수·반납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모든 비용은 종축의 배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② 종축의 배여를 받은 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대여받은 종축을 전대하거나 사양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축의 배여를 받은 자는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 종축의 도난·해방불명·질병·폐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당시의 평가액을 한도로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대여종축의 매각과 양여) ①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에 대하여 대여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생산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가격을 사정하여 대여 받은 자에게 당해 종축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대여한 종축중 빈

축에 한하여 그 대여기간 종료전이라도 대여받은 자가 당해 종축과 동일한 품종 성·연령의 가축을 대여기관에 대납한 때에는 당해 종축을 대여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16조(종계의 검사·확인 등) ① 법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종계의 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계검사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종계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종계로 확인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 9 호 서식에 의한 종계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계검사 신청인으로 부터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수수료는 종계검사 및 종계개량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종계의 유효기간은 산란계는 부화후 20개월 육용계는 부화후 18개월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재차 종계로 확인을 받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종계는 이를 종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종계업의 등록) ① 법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종계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서류는 준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종계업 등록신청서
2.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종계 확인서의 사본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중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업 등록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중계업의 등록과 취소상황을 매월 종합하여 고시하고, 이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부화업의 허가) ① 법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부화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서류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부화업허가 신청서
2. 자가중계장을 활용할 때에는 중계업 등록필증의 사본, 타가중계장을 활용할 때에는 종란공급계약서의 사본
3. 용도별, 세대별 초생추 생산계획서
4. 건물 및 시설의 배치도

② 도지사는 부화업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부화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초생추계통보증서등) ①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초생추를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초생추계통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중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 15호 서식에 의한 초생추 또는 종란반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그 반출입상황을 기재하고 매

월말 현재의 반출입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계장과 부화장의 정기검사) 도지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부화장 및 중계장의 실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축인공수정

제21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법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수정사면허 신청서
2. 수의사면허증·수정사시험합격증 또는 가축번식학과목의 이수를 포함한 학력증명서
3. 신원증명서
4. 건강진단서

② 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 17호 서식에 의한 수정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 18호 서식에 의한 수정사면허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정사시험) ① 도지사는 법제 16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수정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수정사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월이상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외국에서 1월이상 가축인공수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자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9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제 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 과목은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 실기로 한다.

다만 제 3호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

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 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⑥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⑦ 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20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위원회) ① 수정사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내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축산학과 또는 수의학과 교수.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기타 축산관계공무원으로서 3급이상 인자.
3.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제24조(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등) ① 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수정소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수정소등록신청서
2. 수정소의 위치도
3. 건물 시설의 배치도
4. 기계 기구등 주요비용의 명세서
5. 소속 수정사의 이력서 및 면허증의 사본

②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대한 수정소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정액의 공급)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가축인공수정용 정액(이하 "정액"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시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정액과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정액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① 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가축인공수정대상과 정액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가축인공수정 및 정액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정액기준) ① 수정사가 정액을 채취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정액의 양·색·냄새 및 수소이온 농도의 정상

2. 정자의 수·활력·생존률 및 기형률

② 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노 또는 농이 섞여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 이거나 기형율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3.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질환의 세균으로 다수 오염되어 있는 정액
4. 이물이 혼합되어 있는 정액
5. 수소이온 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

제3장 도축의 규제

제28조(도살금지 가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을 금지하는 가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축 및 후보종축
2. 감정결과 임신중인 것으로 인정된 암소
3. 만 6세 미만의 암소
4. 350킬로그램 이하의 숫소

제4장 가축시장

제29조(가축시장의 개설허가) ① 법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가축시장 개설허가 신청서
 2. 가축시장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3. 가축시장 업무 규정
- ② 제1항 제3호의 가축시장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축시장의 명칭 및 업무관리자
 2. 가축시장의 개시일자
 3. 거래가축의 종류 및 거래방법
 4. 기타 가축시장의 업무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도지사는 가축시장 개설예정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가축시장의 개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가축시장의 위치 또는 구조가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2. 개설하고자 하는 가축시장이 가축의 거래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개설하고자 하는 가축시장이 인접 가축시장과 1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때
- ④ 도지사는 가축시장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허가내용의 변경 또는 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고시하고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가축시장 개설허가매장을 비치하고, 허가, 허가내용의 변경 또는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가축시장의 시설) 가축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가축시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의 매매교환에 필요한 사무실 및 안전한 금전 출납 설비
2. 목재·석재·철재 또는 콘크리트제의 계류장·배수구 및 가축의 감정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용지.
3. 출장가축의 방역에 필요한 설비
4. 목재 또는 콘크리트제의 급수설비 및 오물처리 시설
5. 출장가축의 체중측정을 위한 우형기 시설

제31조(가축시장의 업무관리자) ① 개설자가 법제 2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축시장의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설립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1년간 결손없이 전실한 운영을 한 축산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개설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가축시장의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리자를 공고하고, 이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가축시장에서 거래할 가축의 종류) ① 법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가축의 종류는 한우·한우와의 교잡우 및 우우로 한다.

② 국·공립 중축생산기관은 가축시장 밖에서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축을 거래할 수 있다.

제33조(가축시장내 거래의 예외) ① 제32조 제 1항의 가축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관리자를 통하여 거래한 때에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한 것으로 본다.

1. 가축시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
2.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 대단위 목장
3. 초지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목적업자로 등록된 목장

② 제 32조 제 1항의 가축을 관리자를 통하여 제 1항에 출하한 때에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한 것으로 본다.

제34조(가축매매증명서) ① 개설자가 법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할 가축매매증명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② 개설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매매 증명

서의 발급업무를 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매매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자는 개설자에게 매월 그 발급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35조(가축매매수수료의 징수) ① 관리자는 법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매수인으로부터 가축매매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축매매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농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32조 제 1항의 가축에 대한 가축매매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며, 기타 가축에 대한 가축매매수수료는 도지사도 하여금 당해 가축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시장에 입장하는 가축에 대하여 축종별로 가축매매 가격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축시장 사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사용료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개설자는 이를 가축시장의 시설유지 및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6조(가축시장관리계정의 설치) ① 관리자는 법제 3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업무수입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가축시장 관리 특별회계(이하 “환특”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수지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② 환특예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환특예산의 편성) ① 농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 까지 환특예산 편성지침을 도지사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며, 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환특예산 편성요령을 관리자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특예산 편성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목 표
2. 방 침
3. 주요사항
4. 부담금 및 보조금
5. 정원·재산관리·예산집행·기타 필요한 사항

③ 관리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특예산 편성요령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환특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지사에게

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특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전에 승인하여 개신자 및 관리자에게 시달하고 이를 30일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환특예산의 변경등) ① 관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특예산이 확정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예정예산의 승인을 한 때에는 30일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9조(분담금의 징수) ① 농수산부장관은 법제3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가축매매수수료 수입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본부 분담금을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이를 법제32조 제 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관리자간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부분담금을 농업협동조합 도지부장(이하 “도지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이를 법제32조 제 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을 제3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특예산 편성지침 및 환특예산 편성요령에 포함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제40조(분담금의 사용) ①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도지부장으로 하여금 제 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게 한다.

② 분담금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부분담금은 도지사의, 본부담금은 농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보조금 신청절차) ① 제4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보조금 또는 지부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환특분담금보조 신청서를 지부보조금인 경우에는 관리자가 도지사에게, 본부보조금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농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특분담금보조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본부 보조금인 경우에는 중앙회장에게, 지부보조금인 경우에는 도지부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한다.

③ 도지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10일내에 관리자 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환특분담별 운영계획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후 30일내에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환특분담금보조사업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환특결산) ① 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60일내에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환특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내에 도지부장은 지부환특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중앙회장은 본부 환특결산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특결산서를 종합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 35호 서식에 의한 환특결산보고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환특업무담당자) ① 제3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특소속직원(이하 “환특직원”이라 한다)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시장 관리업무와 이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특직원의 정원은 환특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환특직원에 대한 급여는 환특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환특직원의 임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협동조합직원 중에서 환특직원으로서의 승진임용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관리자가 행한다.

⑤ 도지부장은 환특업무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내 관리자 간에 환특직원의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하게할 수 있다.

제 5 장 가축공제

제44조(가축공제단체) ①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가축공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농업협동조합,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및 낙농협동조합
2. 정부 차관을 전액받아 종합낙농개발사업을 행하는 법인

②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축공제단체는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로 한다.

제 45 조(일반가축공제의 대상가축) 법 제38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 가축공제의 대상가축은 생후 6월이상 만13세 미만의 한우·육우 및 한우와의 교잡우로 한다.

제46조(일반가축공제금) 일반가축공제의 공제금 지급액은 농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일반가축 공제금의 지급신청) 일반가축공제의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일반가축공제금 지급신청서에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고,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점안서와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 사체 이용물 평가조서를 첨부하여 법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4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일반가축공제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특수가축공제규정) 법 제3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축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 대상지역 및 공제가입대상자
2. 공제대상가축의 종류 및 범위
3. 공제금액 및 공제요율
4. 공제기간
5. 공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공제료의 수수 환급과 공제금의 지급 및 반납에 관한 사항
7. 공제대상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책임지급준비금

제49조(특수가축공제금의 지급한도) 특수가축공제의 공제금 지급 한도는 가입 당시의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0조(책임지급준비금의 적립) 특수가축공제 단체는 공제로 수입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1조(공제금의 불지급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 제 2항 제 1호의 폐사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자금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특수가축공제에 가입한 가축의 폐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이용물 평가액의 공제) 폐축의 사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체이용물 평가액을 제46조 또는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공제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53조(공제금의 반납) 공제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축 공제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축공제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6 장 축산진흥기금

제54조(축산진흥기금의 관리) ① 법 제45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축산진흥기금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축산물판매부가금의 수납) ① 기금관리자는 축산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판매부가금(이하 “부가금”이라 한다)을 수납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축산기금진흥 수납구좌(이하 “수납구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가금을 수납하는 농협은 매월 수납된 부가금을 다음달 5일까지 중앙회 또는 중앙회가 지정한 농협에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축산진흥기금 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전금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또는 중앙회가 지정한 농협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금된 부가금을 집중 관리하여 매월 집계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설치한 수납 구좌에 납입함과 동시에 집계된 명세서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 징수의무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축산물 판매부가금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그 징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협은 그 영업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영 제 3조 제 2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가금 납입대상자를 확인하여 부가금 수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배합사료 원료수입가격 차액납입과 보전) ① 영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 기준가격이 고시된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한 자(이하 “사료수입자”라 한다)가 기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하여 공급한 때에는 당해 배합사료 원료를 수송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60일내에 기준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입한 때에는 같은 기간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배합사료 원료수입가격 차액보전금 지급신청서를 기금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사료수입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 원료 수입가격차액보전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사정할 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수입 축산물판매 수익금의 납입기한) ① 영 제 5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의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그 수입한 축산물의 판매수익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그 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영 제 5 조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관광호텔용 수입축산물 판매수익금의 수납업무는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8조(사업의 종류) 법 제46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축산통계, 정보 및 관계자료의 수집, 처리, 교환과 발간사업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 분석과 연구사업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사업

제59조(기금운용실적의 보고등) ① 기금관리자는 매 회계년도말 현재의 기금 운용 실적을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후 30일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 상황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축산법시행규칙별표

(별표 1)

종계업등록기준

1. 1,000수 이상의 종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 숫컷의 비율이 평사 사육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이상이어야 하고, 케이지(Cage) 사육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일 것.
2. 계사는 계통별로 구분하여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대가 다른 종계는 동일계사안에 사육하지 아니할 것
3. 종계장 안에는 다음의 위생시설을 갖추는 것

- 가. 정문 및 계사출입구의 소독조 시설
 - 나. 소독 및 세척기구
 - 다. 폐사한 닭과 검시할 닭등 오염물의 소각에 필요한 시설
 - 라. 병계의 격리 사육시설
4. 계분 처리장은 빗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벽과 지붕을 갖추는 것

(별표 2)

부화업허가기준

1. 부화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격리하여 시설할 것
 2. 부화장에 부화실, 초생추실 및 소각장을 갖추는 것
 3. 부화실과 초생추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가. 바닥의 내벽은 콘크리트 등 견구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천정은 낙진, 낙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나. 방수와 청소에 편리하도록 축조하고 배수시설을 갖추는 것
 - 다. 실내에 환기시설을 갖추는 것
 4. 부화장의 출입구에 소독반을 설치할 것
 5. 부화장내에는 부화업 허가증과 검사증을 부착할 것
- (제42호 서식)

경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화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유효기간			
검사년월일			
상기 부화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부화장의 정기 검사를 필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도 지 사			

190mm × 268mm (인쇄용지 특급 1201)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수축(닭)의 적용 지역 고시

현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된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닭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76년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성남시 등에서 실시하려다 생산자의 큰 반발로 그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지난 8월 5일 과거에 고시 또는 유보되었던 것을 폐지하고 서울 부산 수원 대전 광주 대구의 6개 도시를 새로 적용지역으로 고시 하였다. 서울은 제외한 다른 5개 도시는 8월 5일 부터 동법이 시행되며(일반에는 도계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은 79년 2월 1일 부터 시행케 된다.

이법의 시행 규칙은 월간 양계 8월호에 각계의 의견과 함께 자세하게 게재 되어 있다.

이 법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지금까지 76년도의 실패한 원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집행하리라고 생각 되지만 다음 2가지를 행정당국에 건의코저 한다.

첫째 본법의 시행이 서울에서 문제되었었고 이번 고시에 서울시에 대하여는 전 지역을 실시하되 서울 특별시장은 필요한 일정 지역부터 실시하여 점차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있어 도계 유통의 성

패는 이제 서울시의 행정능력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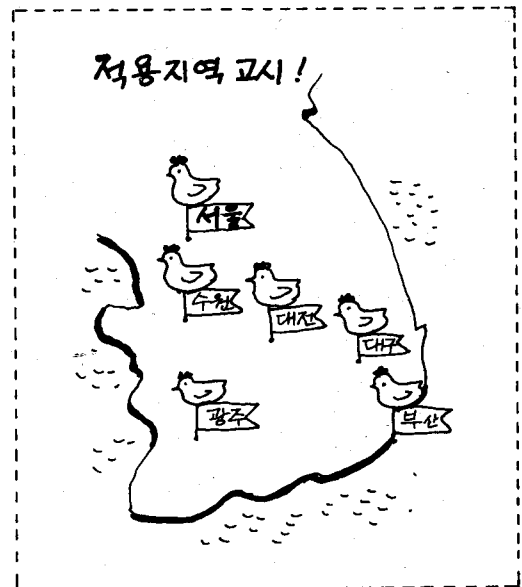
이번 고시의 취지로 보아 76년에도 논의되었듯이 중구 종로구등 일부 중심지역으로 실시될 경우 같은 행정구역이고 동일 생활권내에서 적용지역이 구분될경우 발생할수있는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고.

둘째 과거 북부 서울의 소비가가 의정부에까지 가서 생계를 구입하였던 점을 점을 생각하여 반상회등을 통한 대 소비자 교육을 선행하여야 위생적인 도계유통이 성공할 것이다. 간이 도계장의 출현과 서울시의 일부지역부터 점차확대가 우리가 목표고 하는 위생적인 도계 유통 혁명을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게되게를 바란다.

〈참조〉

농수산부 고시제300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닭에 대한 동법의 적용 지역과 동지정 지역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위한 지정지역 외의



도계장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1978. 8. 5.

농수산부장관 장 덕 진

1. 수축(닭)의 적용지역

가.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한 일정 지역부터 실시하여 점차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한다.

나. 부산시: 전 지역

다. 경기도: 수원시

라. 충청남도: 대전시

마. 전라남도: 광주시

바. 경상북도: 대구시

2. 지정지역 이외의 도계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간이 도계장은 3년 시한부로 설치 허가한다.

부 칙

1. (시행일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서울특별시는 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농수산부 고시 제2698호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은 이 고시에 의한 작업장으로 간주하되 시설 기준이 미달 또는 부적합한 작업장을 고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3. 농수산부 고시 제2698호(75. 9. 23) 및 제2900호(76. 12. 29)는 이를 폐지한다.

30년만의 살인적인
무더위로 양계업
큰 피해
78년도분 종합소득
세에 반영되어야

예년에 없이 일찍 찾아온 30년만의 무더위는 선풍기는 물론 에어컨 까지 품귀현상을 빚어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게 하였다. 산과 바다는 피서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냉방시설이 된 시중다방은 앉을 자리가 없는 형편으로 까지 되었다. 피서도 가지못하고 무더운 계사의 Cage내에 간혀있는 닭들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율의 저하는 물론 질병의 발생, 열사병으로 인한 폐사가 많았으며 부로일러의 경우도 성장의 지연은 물론 5~10% 전후의 폐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종계의 경우 산란저하나 부화율 저조, 종계의 열사병으로 인한 폐사는 영세 종계업자를 울리는데 충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 계란 및 부로일러 가격의 회복세로도 잘 증명되고 있다. 이번 더위로 인한 양계업자의 피해는 정확히 조사되어 78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시 충분한 고려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름철 열사병에 의한 피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일어나므로서 여기에서 몇가지防暑 대책을 생각하여 보면.

1. 外氣温度와 發生과의 關係

열사병의 발생은 외기온도와 밀접한 관

계가 있어 급격히 고온으로 되거나 고온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이 많으며 특히 저녁에 바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시각에 많이 발생 된다고 한다.

금년도 외기온도는 6月 15일부터 8月 15일까지 최고 평균 온도가 29.1℃ 로서 월 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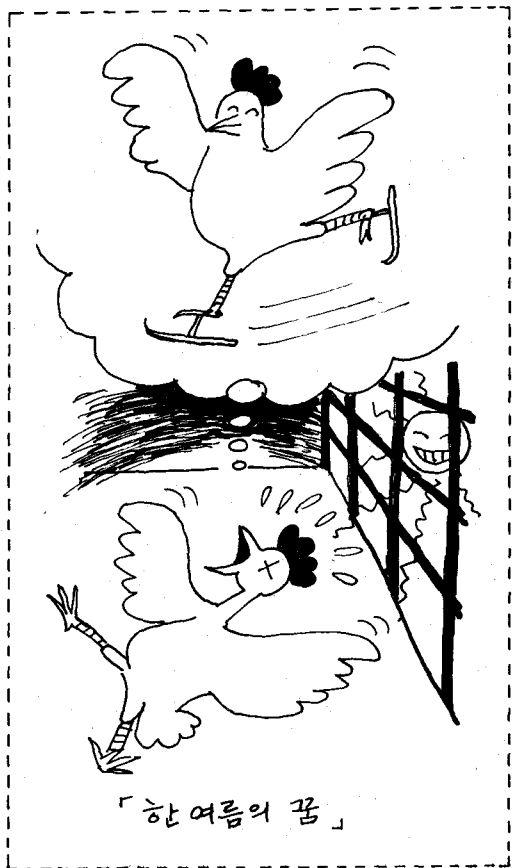
℃					
월일	최고온도	월일	최고온도	월일	최고온도
6.1	26	7.1	29.4	8.1	34.4
2	25.6	2	26.3	2	32.6
3	24.8	3	28.4	3	31.8
4	25.8	4	30.4	4	32.4
5	21.9	5	28.6	5	34.2
6	25.3	6	26.8	6	33.9
7	28.6	7	28.6	7	33.3
8	28.9	8	29.6	8	30.1
9	29.6	9	26.3	9	31
10	28.8	10	27.6	10	29.9
11	26.4	11	25.6	11	30.1
12	28.2	12	27.2	12	32.4
13	29.4	13	28.6	13	25.8
14	22.8	14	28.6	14	27.1
15	26.3	15	27.3	15	28.1
16	30.2	16	27.6	16	26.8
17	30.1	17	27.6	17	29.6
18	25.2	18	29.2	18	25.8
19	29.6	19	27.8	19	23.3
20	28.6	20	30.6	20	21.8
21	25.6	21	31.5	21	27.8
22	29.4	22	33.8		
23	30.4	23	32.8		
24	30.7	24	33.4		
25	23.5	25	34.8		
26	24.4	26	35		
27	24.8	27	34.8		
28	26.6	28	36.1		
29	24.5	29	36		
30	24.9	3	29.4		
		31	34.8		

외기 온도가 30℃ 이상일때 우리나라 계사 형편으로 많은 계사가 40℃ 이상의 사내 온도에 달할것으로 예측 된다.

특히 지난번 7월 27일 까지 외기 온도에 달때 오후에 한시간내의 짧은 시간에 3,000 여수의 채란계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금년의 경우 고온이 연일 계속되어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2. 防暑 對策

방사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과 응급 대책의 2 가지로 생각할수 있겠다.



가) 근본적인 대책

우리나라와 같이 4 계절의 구분이 뚜렷

하고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혹독하게 추운데에는 계사 구조 설비를 개선하는 방법이이다.

계사에 차양을 달고 스킨로폴등 단열재를 이용하여 계사를 서늘하게 하며 계사주위에 잔디를 깔고 수세미 호박 나팔꽃등을 심어 지붕을 덮게하여 복사 열과 직사광선을 막는것 등이다.

다음으로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비하여 사육 밀도를 10%정도 적게 하는것과 고온과습 할때의 사양관리에 대한 평소의 집중적인 교육이다.

나)임시적인 대책

1)통풍 환기

계사를 전면 개방하고 선풍기 환기통 등을 사용하여 통풍 환기로 계사내 온도를 내리는 방법으로 선풍기의 위치를 적소에 배치하여 닭이 있는곳이 통풍이 잘 되도록한다.

2)물을 뿌린다

지붕에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뿌리는 방법과 계사내에 안개와 같이 물을 분무하여 계사에 온도를 2- 3℃ 내리는 방법.

3) 계군에 마이코 프라스마 등의 청정화로 저항력을 길러준다

4)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듣고 이에 응급대처한다. 부로일러의 경우는 밀사가 열사병 발생의 요인중 하나이며 여름철에는 평당 사육수수를 28-30수 정도로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상 몇가지 열거 하였으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많이 나타나므로 앞으로 계사 신축에 특히 단열재 사용등에 많은 연구는 하여야 되겠다.

일본, 「닭의 날」 제정으로 소비촉진에 박차 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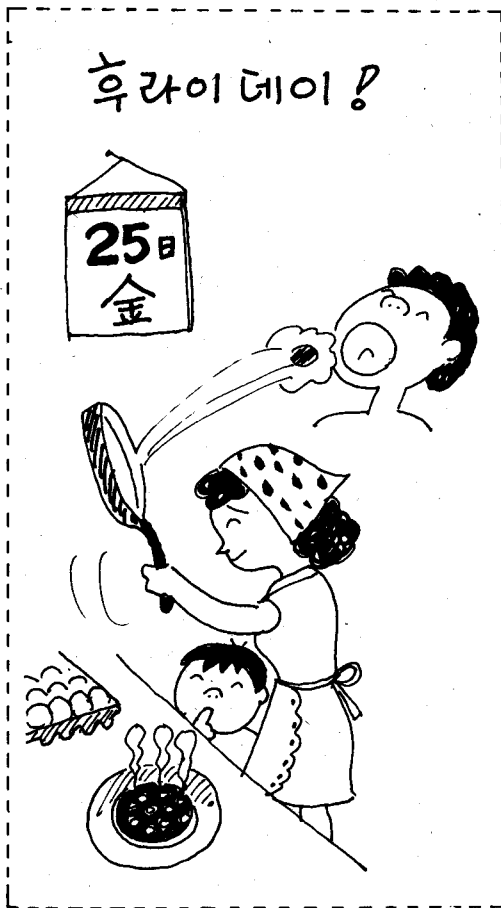
일본에서 지난 4월 24일 일본양계 협회 전국계란소비촉진회, 전국부로일러 소비촉진회 3협회의 주선으로 「닭의 날」 실행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6월 28일부터 매월 28일을 「닭의 날」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에도 이를 시도했었으나 이번에는 년12회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날은 저명한 사원등에서 鶏魂祭를 거행하고 Pack에 채운 계란과 부로일러를 배포하여 그 대금은 자선상자에 넣도록 함으로써 이 기금은 복지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외에도 계란 닭고기용 보급계몽용 Leaflet 배포와 T.V 라디오, 신문등에 선전도 하고 또 종래 열었던 계란제와 요리강습회등도 이날에 집중하도록 하여 매월 28일은 문자그대로 닭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기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이 사업의 실시는 일본 농림성과 축산진흥사업단의 후원도 얻고 또 양계관련단체, 양계업자 모두가 협찬하기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한 날에 특정식품의 이미지를 완전히 주입시킨 풍습은 세계각국에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복날에는 개고기나 닭고기나 많이먹고, 동짓날에 팔죽을 먹으며 정월 대보름에 나물이나, 호두, 땅

콩을 먹은 풍습이 있으며 종전 국가에서 분식을 장려할때 매주 수요일에는 시중 음식점에서는 잡곡밥과 밀가루 음식외에는 팔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둔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기독교도사이에는 성발렌타인 데이의 초콜릿, 카니발의 고기, 부활절의 계란, 추수감사절의 칠면조 등 여러가지의 컴비네이션을 볼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말할것도 없이 계속 의 소비촉진이 국가시책적으로나 양계업



자 개인으로서나 너무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물론 이는 필요성만 내세우는 소극적사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뜻이다. 본회에서는 지난 8月 「닭요리 70선」을 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호평리에 배부를 완료하였다. 이 「닭요리 70선」이 눈에 떨 만큼 큰 효과를 단시간 내에 거두리라고 장담할수는 없으나 이 책자의 발간은 최소한 닭고기의 적극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첫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일본에서 「닭의날」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집중적이고 끊임없는 구매욕을 불러넣는 것처럼 이에 계속적으로 뒷받침할조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촉진에 대한 P. R은 좀더 계속적으로 여성잡지, T. V 신문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에도 대대적으로 응용되어야 한다. 이 닭고기 소비촉진운동에 좀더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지원이 참으로 아쉽다.

원색질병전서

재판준비中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일정부수를 발행하오니
예약바랍니다.